

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Guide(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의무)

□ 근거 법령 및 의무대상 사업장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제품(5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

□ 의무대상 전자제품(26종)

대형기기(4종)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
통신·사무기기(5종)	컴퓨터(모니터·자판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전자·충전기 포함)
중형기기(5종)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소형기기(12종)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VCR, DVD)

□ 의무대상 확대 전자제품 포함 (50종) (“*” 표시제품, 사전활동 : 유예됨, 2020.7.부터 규제 시작이 예상됨.)

온도교환기기(5종)	2.냉장고, 전기정수기, 27.자동판매기*, 4.에어컨디셔너, 28.제습기*
디스플레이기기(3종)	1.텔레비전, 5.컴퓨터(모니터, 노트북)**, 44.내비게이션*
통신사무기기(7종)	5.컴퓨터(본체, 자판)**, 7.복사기, 6.프린터, 8.팩시밀리, 42.스캐너*, 46.빔프로젝터*, 41.유무선공유기*, 26.이동전화단말기(전기, 충전기 포함)
일반 전기전자제품 (34종)	3.세탁기(가정용), 9.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10.전기오븐, 11.전자레인지, 12.음식물처리기, 13.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포함), 14.전기비데, 15.공기청정기, 16.전기히터, 17.오디오(휴대용제외), 18.전기밥솥, 19.연수기, 20.가습기, 21.전기다리미, 22.선풍기(환풍기제외), 23.믹서(주서포함), 24.청소기, 25.VCR/DVD, 29.토스트기*, 30.전기주전자*, 31.전기온수기*, 32.전기후라이팬*, 33.헤어드라이어*, 34.러닝머신*, 35.감시카메라*, 36.식품건조기*, 37.전기안마기*(일반 안마기, 안마의자), 38.족욕기*, 39.재봉틀*, 40.영상게임기*, 43.제빵기*, 45.튀김기*, 47.커피메이커*, 48.약탕기*, 49.탈수기*
태양광패널(1종)	태양광패널

* : 신설확대 품목 표시 / ** : 중복표시 항목 표시

□ 전자제품(50종)의 유해물질(10종) 함유기준 (추가물질 : 유예됨, 2020. 7.부터 규제 시작이 예상됨.)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등 6종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프탈레이트 4종 (DEHP, DBP, BBP, DIBP) : 추가 4종 확대물질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 동일물질 : 나사를 풀거나 절단·압착·파쇄·연마 등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물질 및 이를 코팅한 것과 같은 단일 형태 물질

□ 의무이행 사항

의무이행 시기	사업자의 의무이행 절차	의무 불이행시 벌칙 (부과 기준: 모델별)
- 국내 제조 : 최초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외 수입 :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조·수입 제품별·모델별 유해물질(법정 규제대상 6종)이 법정 기준치 미만으로 함유되도록 조치	(부적합 유통)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법률 제45조 제1항)
	(함유기준 준수 확인) 제품·모델을 국내 제조시 (또는 국외 수입시) 유해물질이 법정 기준치 미만으로 함유된 사실을 스스로 확인 (→함유기준 준수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구비(아래 “FAQ” 참고))	(미확인)함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법률 제45조 제3항 제1호)
	(함유기준 준수여부 공표) 제품·모델 출고 후 (또는 수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준수여부를 공표(→한국환경공단 EcoAS시스템(www.ecoas.or.kr))	(미공표)함유기준 준수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률 제 45조 제5항 제1호) (미제출)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법률 제45조 제5항 제7호)

□ 세부 대상제품

제품	분류 사례	
	대상	비대상
1. 텔레비전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CRT(텔레비전.비디오일체형, DVD일체형, 비디오.DVD일체형, 유료방송용 셋톱박스 일체형등), LCD텔레비전, PDP텔레비전, 프로젝션방식 텔레비전, 차량용 텔레비전, DMB단말기	영상모니터, 영상프로젝트
2. 냉장고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가정용 냉장고, 가정용냉동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화장품냉장고, 차량용냉장고, 업소용제작냉장고, 쇼케이스	- 냉장.냉동창고, 냉장.냉동차량 - 제빙기, 맥주추출기
3. 세탁기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세탁기, 세탁건조기, 전자동세탁기, 2조식세탁탈수기 ※ 가정용 세탁기만 대상	- 업소용세탁기, 드라이클리닝기, 건조기 - 탈수기(빨순이)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창문형에어콘, 벽형(스탠드형 포함)에어콘,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	중앙집중식 공조 냉동기
5.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노트북형·데스크탑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노트북, PC본체, 모니터, 자판, PC본체모니터일체형 - 태블릿PC, 전자칠판 -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VR헤드셋	휴대용전자계산기
6. 프린터	잉크젯·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레이저프린터, 잉크젯프린터, 도트프린터, 산업용프린터(롤프린터, 플로터 등), PC 비연결형 인쇄판 장착 인쇄기	3D 프린터
7. 복사기	컬러식·디아조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디지털복사기, 흑백/칼라복사기, 프린터. 팩시기능 추가 복사기	
8. 팩시밀리	프린터·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열전사식팩시밀리, 디지털팩시밀리, 프린터복사기 추가기능 팩시밀리	
9.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포함)	냉온수기·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업소용 전기정수기, 가정용 전기정수기, 소형(미니) 전기정수기, 물통 전기정수기, 얼음 전기정수기, 냉온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이온수기 기능을 지닌 전기정수기, 직수 전기정수기, 미네랄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조리수기	- 살균수 제조기, 전기 온수기, 순간 온수기 - 온수 디스펜싱기기, 냉수 디스펜싱기기

제품	분류 사례	
	대상	비대상
10.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 직화오븐기(바비큐 오븐), 가스오븐 - 오픈형 전기 그릴, 인덕션 - 뚜껑 덮는 전기 그릴, 식품 건조기, 전기찜기(전기쿠커)
	- 업소용 전기오븐, 가정용 전기오븐, 빌트인 전기오븐, 광파 전기오븐, 스팀 전기오븐, 컨벡션 전기오븐, 할로겐 전기오븐, 미니전기오븐, 복합형 전기오븐, 단일형 전기오븐, 오븐 전자레인지, 오븐조리기, 조리레인지, 오븐토스터 - 에어프라이어, 제빵기	
11.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전기레인지(전기쿡탑)
	업소용 전자레인지, 가정용 전자레인지, 소형(미니) 전자레인지, 다이얼식 전자레인지, 버튼식 전자레인지, 오븐 전자레인지	
12. 음식물 처리기	건조식·분쇄식·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처리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비전기식 싱크대 내장 음식물 탈수기, 음식물 휴지통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음식물분쇄기, 분쇄건조 음식물처리기, 썩크짚순이(부착형 음식물처리기)	
13. 식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포함)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소독·살균·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 식기건조대 - 과일·야채 세척기, 과일·야채 탈수기, 쌀 세척기, 행주건조기, 행주 살균기, 고무장갑 살균기, 청소도구 살균기, 장난감 살균기, 장화세척기, 칫솔살균기, 손건조기 - 초음파세척기, 살균수제조기
	업소용 식기건조(세척)기, 가정용 식기건조(세척)기, 빌트인 식기건조(세척)기, 식기살균·소독·건조기, 수저살균·소독·건조기, 컵 살균·소독·건조기, 젓병살균·소독·건조기	
14. 전기비데	욕실·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 아기 비데(수동형), 기계식(비전기)비데 - 휴대용 비데(건전지 사용)
	업소용 비데, 가정용 비데, 일체형 비데	
15.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 어항산소발생기 - 필터
	업소용 공기청정기, 가정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미니 공기청정기, 대형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산소발생기, 공기살균기, 음이온공기청정기, 공기청정가습기, 공기청정제습기	
16.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 전기보일러 - 물히터(온수히터), 가열총(히팅건), 전기찜질기, 국소적 보온을 위한 제품(전기방석, 전기담요, 전기발열장갑,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 전기찜질기 등)
	산업용(업소용) 전기히터, 가정용 전기히터, 벽걸이형 전기히터, 선풍기형 전기히터, 스탠드형 전기히터, 소형(미니) 전기히터, 원적외선 전기히터, 근적외선 전기히터, 팬 난방기, 전기온풍기(열풍기 포함), 천전형 온풍기, 전기방열기(전기스토브), 전기컨벡터, 전기온열기,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식 돈풍기, 욕실난방기(하트)	
17. 오디오 (휴대용 제외)	전축·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 을 지니고 있는 것	- 휴대용(MP3, 워크맨, CDP, MDP) - 여학학습기, 노래방반주기, 확성기
	오디오 DVD 일체형, 컴포넌트시스템	

제품	분류 사례	
	대상	비대상
18. 전기밥솥	<u>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u> • 업소용 전기밥솥, 가정용 전기밥솥, 소형(미니) 전기밥솥, 일반전기밥솥, 압력전기밥솥, IH압력전기밥솥, 단순기계식전기밥솥, 마이콤식 전기밥솥, 다이얼식 전기밥솥	• 비전기식 냄비형 압력밥솥 • 전기보온기
19. 연수기	<u>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u> • 업소용 연수기, 가정용 연수기	• 비전기식 녹물제거연수기
20. 가습기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u>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u>을 지니고 있는 것 • 업소용 가습기, 가정용 가습기, 미니(휴대용)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버튼식 가습기, 다이얼식 가습기, 터치식 가습기, 펌트병 가습기, 공기청정가습기 • (가습 기능 포함) 향온향습기	• 천연가습기
21. 전기 다리미	<u>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u>을 지니고 있는 것 • 업소용 전기다리미, 가정용 전기다리미, 소형(휴대용) 전기다리미, 핸디형 전기다리미, 스틱형 전기다리미, 직물용, 전기스티머(스팀 전기다리미), 건식 전기다리미, 유선 전기다리미, 무선 전기다리미	
22. 선풍기 (환풍기 제외)	<u>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u>을 지니고 있는 것 • 업소용 선풍기, 가정용 선풍기, 천장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벽걸이형 선풍기, 타워형 선풍기, 소형(미니) 선풍기, 날개없는 선풍기, 냉풍기, 빙풍기, 공기순환기	• 송풍기, 환풍기 • 선풍기 내장형 쿨링시트(통풍시트)
23. 믹서 (주서 (juicer) 포함)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u>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u>을 지니고 있는 것 • 업소용 믹서기, 가정용 믹서기, 소형(미니) 믹서기, 식품 가공기, 핸드블렌더, 압즙기, 원액기, 거품반죽기, 주서기, 주서믹서기, 녹즙기, 분쇄기(커피 분쇄기 등), 빙삭기, 슬라이스기, 전기고기갈개,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 아이스크림슬러시 제조기, 우유거품기	• 전기약탕기(슬로우쿠커)
24.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u>청소 기능</u>을 지니고 있는 것 • 업소용(사무실용) 청소기, 가정용 청소기, 차량용 청소기, 침구용 청소기, 미니(핸디, 무선) 청소기, 스틱형 청소기, 로봇 청소기, 스팀(진공) 청소기, 고압 세척기, 카페트 세척기, 마루광택기(대리석연마기), 잔수처리기(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해빙기	• 비전기식 회전(물걸레) 청소기
25. 비디오 플레이어	<u>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u>을 지니고 있는 것 • vcr플레이어, dvd플레이어, vcr-dvd 등 겸용 플레이어, 휴대용 dvd플레이어, 블루레이 플레이어, 유니버설 플레이어, dvd-dvix콤보	• 디빅스플레이어, 셋톱박스
26. 이동전화단말기	<u>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u>을 지니고 있는 것 •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 단독 음성 통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 차량용카폰

제품	분류 사례	
	대상	비대상
27. 자동 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미니 자동판매기, 커피 자동판매기, 캔 자동판매기, 특수 자동판매기(라면 자동판매기, 일회용품 자동판매기 등), 원두커피 자동판매기, 담배 자동판매기, 포장 식음료 자동판매기, 신문·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또는 디스크 자동 판매기, 티켓 발매기, 키자판기	- 결제 기능이 없는 커피머신 -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 물품보관함, 무인택배보관함
28.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9.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이나 빵을 굽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0.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1. 전기온수기	저장식·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2. 전기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3.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4.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5.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6.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7.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 일부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8.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0. 영상게임기	휴대용을 제외하고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자기기	
41. 유·무선공유기	유선·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2. 스캐너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3.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4.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5.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6. 빔프로젝터	액정 평판디스플레이(LCD), 브라운관(CRT),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7.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8.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9.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 환경정보장제도 면제 대상제품

품목	세부품목	관련 법령	세부 조항
연구용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예규	제14조 제1항 제613호
의료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득한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환경부 예규	제6조 및 제15조 제613호
1차 전지 사용	충전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지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전기·전자제품 (단, 연수기는 제외)	환경부 예규	제613호
USB 단독전원	유에스비(Universal Serial Bus) 단자에 의해서만 전원을 공급받는 전기·전자제품 (단, 어댑터(adapter) 등 전원 공급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제품은 제외)	환경부 예규	제613호
자가 사용 제품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자가사용 제품	환경부 예규	제613호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설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동작하는 기계·장비의 결합 또는 대형 조합으로서, 고정된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설치·해체·사용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환경부 예규	제613호
전량 수출품	국내에서 내수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는 제품은 국내법령상의 준수 대상에서 제외됨. (단, 환경공단 현장조사에 대비하여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		
모델명만 변경된 제품	설계·기능 등 내·외관의 변경이 없는 제품		
자동차 부품용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제8조
국가안보/군사적 장비용 전기·전자제품	국가 안보관련 또는 군사적 장비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본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관련 협회 및 사업자 등이 제기한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FAQ

Q1.자사는 전자제품 “재활용의무 대상자”가 아닌데 사전예방규정을 이행해야 하나요?	A. 사전예방규정은 재활용의무대상자(의무대상 전자제품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액 3억원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다.									
Q2.자사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전자제품에 대해 “KC인증”이나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은 경우 사전예방의무는 면제될 수 있나요?	A.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또는 안전확인)”이나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을 받은 경우에도 사전예방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이행 근거법령이 서로 다름)									
Q3.타사가 과거에 자사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한 경우 자사 의무는 면제되나요?	A. 귀사에서 해당 수입모델에 대한 사전예방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이행 주체 :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Q4.다기능 제품이라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제품 중 복수의 제품에 해당할 경우 어떤 제품으로 분류하면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주기능에 따라 대상품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1) 공기청정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습기는 가습기로, 가습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로 분류									
Q5.자동차 부품으로 탑재된 전기전자제품도 대상인가요?	A.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성보장제 대상 차량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9인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소형) 출시 시 부분품·부속품으로 부착된 기기는 자동차의 부분품·자동차 환경성보장제 대상이므로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출시 후 차주가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차량용 TV, 오디오, 냉장고 등과 부품의 교환에 사용된 판매분은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대상이므로 재활용의무생산자·판매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6.개별 품목으로 판매되는 개인용컴퓨터의 모니터 및 자판이 유해물질 준수 선언 대상이 됩니까?	A. 준수공표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모니터 및 자판만을 생산하여 컴퓨터 제조사로 납품하는 경우 컴퓨터 제조사가 모니터 및 자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공표 및 재활용정보 제공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Q7.사전예방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전자제품 단위는?	A. 의무이행 단위는 “모델”로, 기존의 생산된 제품과 비교하여 설계·기능 등 내·외관이 변경되어 고유한 명칭 기호가 새로 부여된 경우입니다.									
Q8.자사 출고(또는 수입)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공표방법”은?	A. ① 한국환경공단 “EcoAS 시스템(www.ecoas.or.kr)” → ② 전기전자제품 관리 → ③ 사전예방관리 → ④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 ⑤ 신규 작성									
Q9.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구비하여야 하는 “증빙자료”의 종류는?	A. 다음 2~3 가지 자료 중에서 택일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table><tr><th>구비할 증빙자료</th><th>제 조 업자</th><th>수 입 업자</th></tr><tr><td>(방법 1) 유해물질 함유기준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증빙자료</td><td rowspan="2">택일</td><td rowspan="3">택일</td></tr><tr><td>(방법 2)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td></tr><tr><td>(방법 3) 수출국가 제조사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사실을 증명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 인증시험기관의 서류 또는 표지(마크)</td><td>-</td></tr></table>	구비할 증빙자료	제 조 업자	수 입 업자	(방법 1) 유해물질 함유기준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증빙자료	택일	택일	(방법 2)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방법 3) 수출국가 제조사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사실을 증명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 인증시험기관의 서류 또는 표지(마크)	-
구비할 증빙자료	제 조 업자	수 입 업자								
(방법 1) 유해물질 함유기준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증빙자료	택일	택일								
(방법 2)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										
(방법 3) 수출국가 제조사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사실을 증명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 인증시험기관의 서류 또는 표지(마크)	-									
Q10.자사 출고(또는 수입)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와 관련한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A.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조회된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분석관련 공인 시험기관 중에서 택일하여 분석을 의뢰하면 됩니다. ⇒ 한국인정기구(www.kolas.go.kr) → “공인기관 검색” → “시험기관 검색” → “규격분야”에 “IEC” 선택 → “ 규격번호 ”에 “62321” 입력									

Q11.부분품, 부속품의 대상 여부 및 정의는 무엇입니까?	A.대상제품 출고 시 추가로 구성되는 부분품. 부속품은 대상으로 포함, 세트 상품 전체 실증량 기준 의무량이 부여됩니다 (별매품으로써 개별 출고·판매되는 부분품. 부속품은 비대상으로 분류) “부분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부속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합니다. (예) 대상 부분품 : 전기밥솥 내솥 대상 부속품 : 리모컨, TV거치대 ※ 재활용의무생산자·판매업자가 출고량·매입량을 신고할 경우 제품중량은 세트 상품으로 구성된 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하며, 포장재·사용설명서·매뉴얼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Q12.「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는?	A.「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단체가 직접 또는 대행으로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행으로 견본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는 관련 서류(연구기관 수입대행 계약서, 수입대행 사유서, 용도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Q13.반품된 제품은 출고량·매입량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A.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출고(반품, 견본품 및 사은품 포함)된 의무대상 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견본품 및 사은품 포함)한 의무대상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신고합니다. 단, 제조·수입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매입에서 제외하며, 소비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매입량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Q14.국내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경우 의무대상자는?	A.국내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상표권이 주문자에게 있으므로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며 출고량 신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15.직물, 니트 및 완성된 의류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의류 프린트 기기(On-demand inkjet printing system)의 대상여부는?	A.대상입니다. 대상여부의 판단 기준은 제품의 기능으로 출력된 결과물이 종이 아니더라도 연산장치를 통한 출력의 기능을 가진 제품은 모두 프린터로 분류합니다.
Q16.점자를 press하여 찍어주는 시각 장애인용 점자인쇄기의 대상여부는?	A.대상입니다. 점자를 인쇄하는 기능을 가지고 연산장치에 의한 정보를 출력하는 장치로 잉크의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Q17.상업용 사진현상기기의 대상여부는? (본 기기는 화학적 처리를 통해 사진용 인화지에 사진 이미지를 형성시키며, 전문 사진현상 랩에서 다양한 화학물질과 더불어 사용됩니다)	A.비대상 품목입니다. 사진의 인화 및 현상 과정 일체를 수행하는 자동기기로서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8.문서 및 서류 등을 프린터컨트롤러(등사원리)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기능을 갖는 등사기(Duplicating machine)의 대상여부?	A.대상입니다. 등사기는 프린터컨트롤러(등사원리)를 이용하여 영상 및 문서를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로,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복사기에 해당됩니다.
Q19.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소매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A.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면 대상입니다.
Q20.인터넷으로 판매했습니다.	A.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면 대상입니다.

Q21.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면제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판매업자의 연간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예: 도매업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면제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증빙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22.매출액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A.<매출액 증빙서류> - 외부감사 대상 : 손익계산서 - 외부감사 비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증명원, 결산보고서 - 기타 소규모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Q2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의「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이란 어떤 사업장을 말하나요?	A.「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간에 제품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제조·수입업자가 자사의 상표(브랜드) 및 제조·수입업자가 출자한 판매업자의 상표(브랜드)를 제공하여 자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판매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가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종속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석 등 포함),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2호) 자료, 출자확인서 등 출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속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4.매출액은 100억인데 공사대금이 대부분이고 에어컨 판매분은 5억뿐입니다. 그럼 면제인가요?	A.네. 매출액 50억은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매출액 기준이므로 위의 경우 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하셔야만 면제 가능합니다.
Q25. 3개의 판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별 매출액이 35억, 5억, 15억일 경우 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매출액을 합산하는 기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 동일법인(법인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 동일사업자(주민등록번호)입니다. 즉, <u>법인사업자는 법인 전체 매출</u>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u>전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u> 을 더하여 50억원 이상이 될 경우 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26.냉장고 판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양에 대한 매출액이 100억,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양에 대한 매출액이 10억입니다. 대상일까요?	A.대상입니다. <u>매출액 기준</u> 은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체 매출액 이기 때문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양에 대한 매출액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매출액(11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도매업자로부터 회수한 양에 대해서는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매업자가 의무 이행),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양에 대해서만 회수의무량을 부여받습니다.
Q27.세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계획서는 각각 내야 되나요?	A.다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무이행계획서, 출고수입 또는 매입판매실적서, 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 법정 제출서류를 <u>법인사업자는 본점에서, 개인사업자는 대표 사업장에서 일괄</u>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Reference

1. 약칭 :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예규 제613호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3.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 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Easy Guide -
4. 한국환경공단 환경정보장제 “EASY 컨설팅” 교육자료
5. EcoAS 시스템 FAQ(자주하는 질문) (폐전기·전자 부문)